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2021. 6.

◀ 목 차 ▶

1. 검토 배경 / 1
2. [생계비] 現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도달 / 2
3. [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 / 4
4. [노동생산성] 최근 5년(2016~2020)간 노동생산성 증가율(0.8~17.2%)은 최저임금 인상률(53.9%)에 비해 현저히 낮음 / 7
5. [소득분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 기준으로 주요 소득분배지표 개선되지 않음 / 9
6. [지불능력]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 / 12
7. 결론 / 14

1 검토 배경

- 우리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명시
- 이러한 4가지 결정기준은 예시조항으로서, 반드시 동 기준만을 한정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결정기준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요소임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가 포괄적·예시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고려요소를 최저임금액 결정 시 필수적으로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위 요소들을 통합한 산술식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이 특정 계산값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6.11.선고 2019구합79145).

- 이에 더해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인 '지불능력'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
- 최저임금 지급 주체의 지불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임금 결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임.

2 **[생계비]** 現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도달 ⇒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태생계비 평균은 약 208만원으로 나타남. 근로자위원측은 이를 근거로 現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생계비는 고소득자의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값으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생계비 수치가 될 수 없음.
- ▶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現 최저임금은 생계비 측면에서 인상요인 없음.

■ 최저임금 심의 시 고려되어야 할 적정 생계비는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임.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 시 고소득층을 포함한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의 평균치가 아닌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하는 것이 타당

- 최저임금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는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의 평균 실태생계비로 2,084,332원, 분위수별 평균 실태생계비로 50%(생계비 중위수 100%)는 1,847,156원, 25%는 1,386,992원을 산출하여 제시

⇒ 이 중 전체 평균 실태생계비는 고소득층의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것으로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하는 생계비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생계비까지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최저임금 근로자와 소득이 유사한 계층의 생계비 활용 근거 >

- ①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중위임금의 2/3(67%)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로 정의
- ②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라는 것이 전반적 견해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1,795,310원으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1,847,156원)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

○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생계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생계비의 증감을 측면에서도 2020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대비 4.6% 감소(중위수 100% 생계비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2019년 2,184,538원에서 2020년 2,084,332원으로 4.6% 감소

○ 분위수 기준 50%(실태 생계비 중위수)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2019년 1,861,575원에서 2020년 1,847,156원으로 0.8% 감소

3 [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적정 수준의 상한선 초과 ⇒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였으며(최저임금위원회 및 OECD 분석 기준),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따라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최저임금위원회 분석 기준)

<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중위임금 대비 60%)에 대한 근거 >

- ① EU 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최저임금의 주요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0%를 제시
 ⇒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유럽 국가는 평균임금의 50% 또는 중위임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ETUC, 2012.2)
- ②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명시적 기준은 없으나,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한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도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제시
 ⇒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면 중위임금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려면 중위임금의 45~60% 정도면 된다. 그 밑으로 가면 최저임금 의미가 없고, 더 높아도 의미가 없다” (언론 인터뷰, 2015.3).

○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최저임금위원회, 2021)

< 표 1. 2020년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중위값 기준)>

구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시간당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시간당 임금총액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2020	13,295원	64.6%	13,034원	65.9%

주 : 1인 이상 기준 / 2020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적용하여 비율 산정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OECD 기준으로도 現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하였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보다 높은 수준(2020년 추정치)

※ 노동계는 유럽 국가에서 10인 이상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과대 추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OECD 29개국 중 10인 이상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11개국임.

⇒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OECD 비교기준은 전일제 근로자(full-time employee) 이나, OECD는 우리나라를 전일제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어,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OECD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추정

※ OECD에 게재된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6%로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9개국 중 5위(2019년 기준)

○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

※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 , 2020년 추정치)

[한국] 62.4 vs [G7 평균] 48.6

[프랑스] 61.3 [영국] 57.1 [캐나다] 50.0 [독일] 48.1 [일본] 44.3 [미국] 30.7

< 표 2.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0) >

순위	국가명	중위임금 대비	순위	국가명	중위임금 대비	순위	국가명	중위임금 대비
1	콜롬비아	90.8%	11	룩셈부르크	54.7%	21	독일	48.1%
2	터키	73.9%	12	이스라엘	54.4%	22	네덜란드	47.7%
3	칠레	70.3%	13	호주	54.2%	23	벨기에	46.7%
4	뉴질랜드	68.8%	14	멕시코	52.5%	24	일본	44.3%
5	포르투갈	63.2%	15	슬로바키아	51.8%	25	라트비아	44.0%
6	한국	62.4%	16	스페인	51.7%	26	에스토니아	43.8%
7	슬로베니아	61.4%	17	캐나다	50.0%	27	체코	43.5%
8	프랑스	61.3%	18	헝가리	49.4%	28	아일랜드	42.6%
9	영국	57.1%	19	그리스	48.6%	29	미국	30.7%
10	폴란드	56.2%	20	리투아니아	48.6%	OECD평균(29개국)		54.2%

- 주 : 1. 순위는 임금총액 중위값(median)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순
2. 임금총액 중위값이 OECD 게재 기준 최근 5년(2015~2019)간 연평균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단, 독일은 2016~2019년간 연평균 상승률 기준)
 3.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7.25달러) 기준으로 분석. 46개 주(50개 주, 1개 특별구 중 최저임금이 없는 5개 주 제외)의 최저임금 평균(2020년 기준 9.46달러) 적용 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0.0%로 상승하나, 순위변동 없음.
 4.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州) 최저임금 기준(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으며,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온타리오 주를 기준으로 자료 발간)
 5. 2020년도 최저임금은 Eurostat,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 고시 원문자료 참조
- 자료 : OECD, Eurostat,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등

4

[노동생산성] 최근 5년(2016~2020)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0.8~17.2%)은 최저임금 인상률(53.9%)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최근 5년(2016~2020)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1.7%, 시간당 기준 9.8%에 불과.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8.7%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인상률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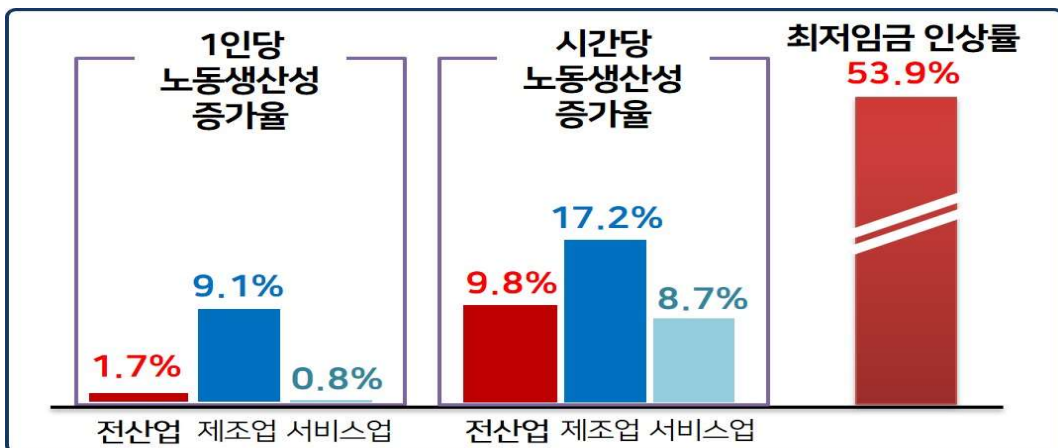
■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은 53.9% 인상되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함.

- **(최저임금 vs 노동생산성)**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 53.9%이나, 동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1.7%, 시간당 9.8%에 불과
 - 최근 3년(2018~2020)간으로 살펴보다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이나, 동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 시간당 5.0%에 불과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최근 5년(2016~2020)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 시간당 8.7%에 불과

*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83.8%는 서비스업에 종사(최저임금위원회, 2019.6)

< 그림 1.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2015년 대비 2020년) >



※ 주석 및 자료는 <표 3> 과 동일

< 표 3.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지수 추이(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기준)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인 당	전체	100.0	100.3	100.9	101.1	101.5	101.7
	제조업	100.0	102.0	105.1	106.4	108.0	109.1
	서비스업	100.0	100.2	99.7	100.3	101.1	100.8
시 간 당	전체	100.0	101.6	104.6	106.5	107.7	109.8
	제조업	100.0	102.9	107.7	111.0	113.5	117.2
	서비스업	100.0	101.5	103.5	105.7	107.1	108.7
최저임금		100.0	108.1	115.9	134.9	149.6	153.9

주 : 1.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시간당, 1인당) 기준

2. 생산성본부는 부가가치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을 반영하여 '2015년 노동생산성 = 100'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해당 자료를 인용하여 2015=100 기준으로 분석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최저임금위원회

5

[소득분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 기준으로 주요 소득분배지표 개선되지 않음 ⇒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되었으며,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 그러나 해당기간 동안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
- ▶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29.1% 급격하게 인상된 2018~2019년에도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시장소득 기준)는 개선되지 못하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됨. 이는 2018~2019년간 소득분배가 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조세제도, 공적 이전소득지출에 의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

■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되어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의 약 2배에 달하나, 해당기간 동안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됨.

-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되었으며,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
- 최저임금인상률이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의 1.8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상승)*되는 모습

*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도시 2인 이상 가구, 통계청)

< 지니계수 >

[시장소득 기준] 0.279('00) → 0.298('05) → 0.315('10) → 0.305('15) → 0.317('16)

[처분가능소득 기준] 0.266('00) → 0.281('05) → 0.289('10) → 0.269('15) → 0.278('16)

< p90/p10 >

[시장소득 기준] 3.75('00) → 4.41('05) → 4.90('10) → 4.68('15) → 5.01('16)

[처분가능소득 기준] 3.50('00) → 3.96('05) → 4.08('10) → 3.54('15) → 3.78('16)

⇒ 2017년 이후 소득분배 관련 조사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뀜에 따라 시계열 단절 발생(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 이후 자료만 소급하여 제공)

■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29.1%)되었으나,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시장소득 기준)는 개선되지 않음.

○ 당시(2018~2019년) 시장소득 기준 주요 소득분배 지표는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2019년에는 오히려 악화(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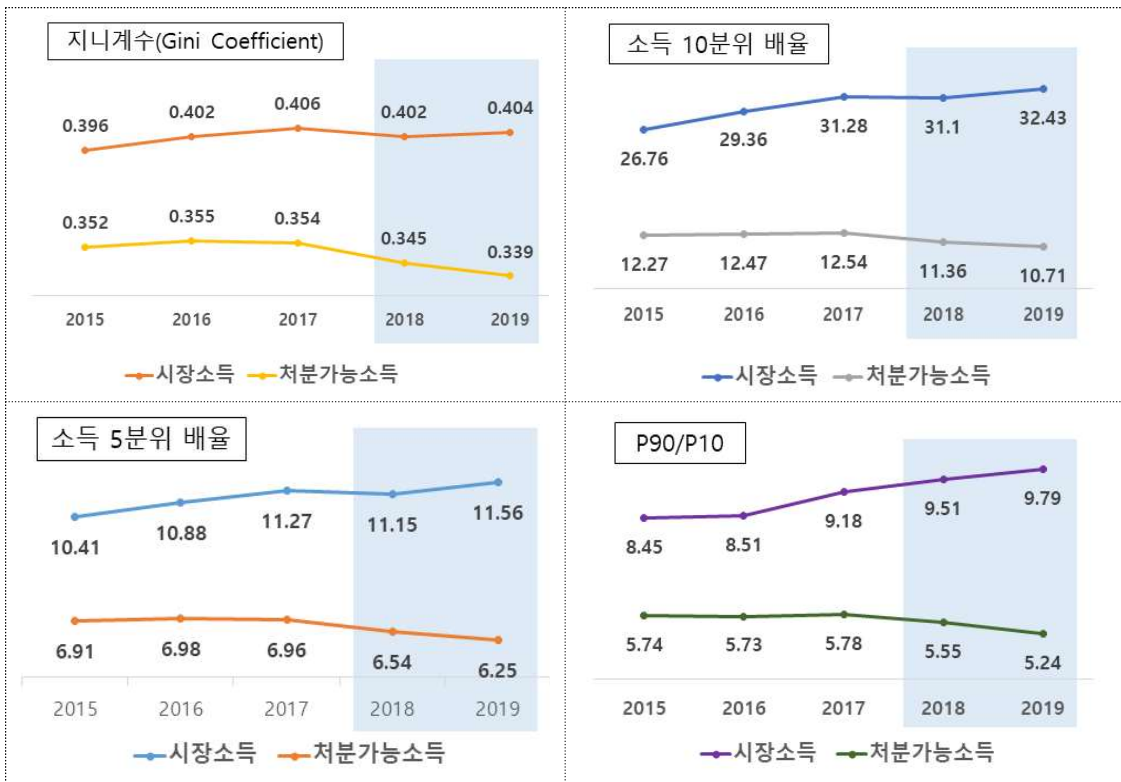
- 다만,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보다는 조세나 보조금 같은 이전 지출 증가 등 정부 정책의 결과로 추정됨.

※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지표의 개념(통계청)

[시장소득 기준]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세전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분배지표 산출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세후소득)을 기준으로 분배지표 산출

< 그림 2. 최근 5년(2015~2019)간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

■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계층의 임금이 더 크게 올라 소득분배가 개선되어야하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산입범위 개편(2019년 시행)으로 우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협소하며,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괴리가 더욱 심했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저숙련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유지·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해당 계층의 소득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

- 소득 5분위별 가구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2018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3.3~36.8% 감소

※ 소득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감을 추이(% , 전국 2인 이상, 전년동기비, 통계청)

[2017년] $\Delta 5.2('17.1q) \rightarrow 2.9('17.2q) \rightarrow 10.2('17.3q) \rightarrow 20.7('17.4q)$

[2018년] $\Delta 13.3('18.1q) \rightarrow \Delta 15.9('18.2q) \rightarrow \Delta 22.6('18.3q) \rightarrow \Delta 36.8('18.4q)$

[2019년] $\Delta 14.5('19.1q) \rightarrow \Delta 15.3('19.2q) \rightarrow \Delta 6.5('19.3q) \rightarrow 6.5('19.4q)$

6

[지불능력]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 ⇒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15.6%)로 높게 나타나고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30~40%에 육박하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 ▶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月 250만원) 미만이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0.2%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역대 최고치는 2019년 16.5%)하였으며,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짐.

- 최저임금 미만율이 숙박 및 음식점업 42.6%, 1~4인 사업장 36.3%에 달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2020년 기준)

※ '20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경찰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 ▶ 주요 업종별 : (숙박음식업) 42.6 (도소매업) 18.5 (농림어업) 51.3
- ▶ 주요 규모별 : (1~4인) 36.3 (5~9인) 20.1 (10~29인) 13.5

■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54.0%는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月 250만원) 미만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이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11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4만여개 사업체(모집단 332만개사 중 4만개사 표본추출) 중 54.0%는 연간 영업

이익이 3천만원(月 250만원) 미만이고, 17.9%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 미만(중소벤처기업부, 2020.12)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표 4. 영업이익 구간별 소상공인 분포(2019) >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구성비	17.9%	36.1%	22.7%	23.3%

자료 : 중소기업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12

○ 소상공인 521명 중 43.8%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2021년 8,720원)에서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소상공인연합회, 2021.6).

■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40.2%로 나타나 기업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비율 100%미만) 중소기업이 52.8%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 추이(% , 한국은행)
41.6('16)→ 44.1('17)→ 47.2('18)→ 48.0('19)→ 52.8('20.上)

○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2%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경총·중기중앙회, 2021.5)하여 기업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7 결론

■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표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볼 수 없음.

- **(생계비)**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
- **(유사근로자 임금)**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및 OECD 분석 기준),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
- **(노동생산성)**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1.7%, 시간당 기준 9.8%에 그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 근무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8.7% 수준에 불과
- **(소득분배)** 2001~2017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8.6%)은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약 2배 수준이나 해당기간 동안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 이후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29.1% 급격하게 인상된 2018~2019년에도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시장소득 기준)는 개선되지 못하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되어, 2018~2019년간 소득분배가 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공적 이전소득·지출에 의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

■ '지불능력' 기준에서도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 **(지불능력)**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15.6%)로 높게 나타나고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30~40%에 육박.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月 250만원) 미만이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0.2%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